

5. 公共用地的取得및損失補償에關한 特例法施行令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92-10號 1992. 1. 29

1. 개정이유
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關한특례법의 개정(1991.12.31. 법률 제4484호)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아울러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가.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함.
- 나. 국가가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수도사업과 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시킴.
- 다.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절차, 발행방법 및 사무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.
- 라.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

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의 취득원인이 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함.

- 마.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알선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·시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.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토지국장, 전화번호 500-2849, 2851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